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 안 번 호	1386
------------	------

2020년 6월 18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제안경위

- 2020. 4. 1. 고병국 의원 발의 (2020. 4. 8. 회부)

2.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9.8.6.)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방법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개정하고, 회의록을 제외한 심의자료는 심의 후 바로 공개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관련한 공개대상을 회의록과 심의자료로 구분 함(안 제61조제2항 본문)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는, 심의결과에 상관없이 심의 후 바로 공개토록 함(안 제61조제2항제4호 신설)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자료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함(안 제61조제3항)

4.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¹⁾(이하,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방법을 기존의 ‘열람’ 외에도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을 추가하고, 회의록 중 심의자료의 공개시기를 별도로 규정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61조(회의록)</p> <p>② 시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 <u>회의록의</u>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신 설></p> <p>③ 제2항에 따른 <u>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u> 방법으로 한다.</p>	<p>제61조(회의록)</p> <p>② ----- ----- ----- <u>회의록 및 심의자료의</u> ----- ----- -----.</p> <p>1.~ 3. (현행과 같음)</p> <p>4. <u>심의자료는 심의결과에 상관없이 심의 후 바로 공개한다.</u></p> <p>③ ----- <u>회의록 및 심의자료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u> -----.</p>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규정 등을 준용

* 이 조례 제63조(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제56조, 제57조제2항, 제6항부터 제11항, 제5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은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붙임1) 회의록의 공개 시기는 조례에 위임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붙임2) 회의록에는 심의자료가 포함된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심의자료의 공개시기를 추가 규정하고, 더불어, 시행령 개정으로('19.8.6.) 회의록의 공개방법이 '열람' 외에도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확대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 위원회 회의록은 안전 상정시 제출되는 심의자료와 회의 후 정리되는 속기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행 규정에서는 속기록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심의 후 30일이 경과하면 회의록을 공개토록 하고 있으나, 심의자료는 위원회 회의 시 제출되어 그 공개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으므로, 이 개정조례안은 심의자료에 한해 심의 후 바로 공개토록 하여 관계자 및 일반시민들의 알 권리를 높이고자 한 것으로 이해됨.
- 심의결과에 상관없이 심의자료를 공개하는데 있어, 의사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자료의 공개 타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상위법²⁾ 및 관련법³⁾ 공익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비롯해 의사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과정에 있는 사항의 공개 제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사안에 따라 집행부가 유연히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법조문을 이 조례에 인용 규정하는 것도 회의록 공개에 대한 시민들의 종합적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공개방법을 확대한 시행령의 개정 취지와, 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관심을 고려할 때, 시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자 한 이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심의자료의 신속한 공개는 입안자 및 관계자(사업시행자 등)의 신속한 이해와 대응을 가능케 하여 서울시와 보다 적극적인 업무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구 분	2019			2018			2017		
	심의 건수	자문 건수	열람 건수	심의 건수	자문 건수	열람 건수	심의 건수	자문 건수	열람 건수
도시계획위원회	71	21	45 (49%)	73	9	31 (38%)	154	29	48 (26%)
도시건축공동위원회	66	3	24 (35%)	87	1	9 (10%)	88	9	9 (9%)

- 참고로, 회의록의 공개방법에 전자열람이나 전자파일 제공은 불허하고 있는데, 원본 수정의 가능성과 이에 따른 분쟁 발생 등을 우려하여 종이출력물로 한정하는 것으로 이해됨.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계획 포털 등 특정 사이트에서 캡처 기능을 제한한 상태로 종이출력물의 스캔 파일을 열람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고안한다면 회의록의 전자열람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이는 관계자·시민의 도시계획 정보 접근의 편리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뿐더러 도시계획 정보의 전산화 시책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회의록 전자열람을 위한 구체적 방법 마련 및 법령 개정 건의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담당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정희
연락처	02-2180-8206
이메일	rienrien@seoul.go.kr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1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시도시 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2명 이하의 속기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도시 계획위원회 <u>회의록</u>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의 종결된 안건의 경우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 2. 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 3. 제2호의 기간이 지나 재상정된 보류 안건의 경우 심의 종결 또는 보류에도 불구하고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 <p><u><신 설></u></p> <p>③ 제2항에 따른 <u>회의록</u>의 공개는 <u>열람</u>의 방법으로 한다.</p>	<p>제61조(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회의록 및 심의자료</u>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심의자료는 심의결과에 상관없이 심의 후 바로 공개한다.</u></p> <p>③ ----- <u>회의록 및 심의자료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u> -----.</p>

<붙임 1>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사장 소안건·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113조의2 단서에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란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붙임 2> 회의록 관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 2018)

① 질의요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심의조서, 파워포인트 설명자료, 결과통보 공문)를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공개 청구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에 따라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회의록만 해당되므로 심의자료는 사본 또는 전자파일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회신내용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3의 제2항에 따라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때 회의록에는 심의자료가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2269, 2013.06.19.>